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52
----------	-------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발 의 자 : 민형배 · 이성윤 · 최혁진
조계원 · 김문수 · 문정복
김우영 · 정준호 · 소병훈
안도걸 · 윤종오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뉴스통신진흥회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뉴스통신의 독립성·중립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뉴스통신은 국가의 핵심 정보통신 기구로서 정보주권 수호, 정보격차 해소,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 더 나아가 정치적 중립성과 합리적 운영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및 연합뉴스사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 뉴스통신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뉴스통신진흥회의 공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뉴스통신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성을 반영한 구조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선출 절차 역시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26조 및 제30조의2 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7명의”를 “11명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언론”을 “사회”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고, 2명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 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 조직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별 추천인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정수(整數)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숫점 이하 수가 가장 큰 순으로 배분하며 소숫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첨하

여 결정한다.

각 교섭단체별 추천인 수	=	5	×	해당 교섭단체 의석수	÷	각 교섭단체 의석수의 합계
------------------	---	---	---	----------------	---	-------------------

2. 진흥회 임직원 과반수가 뉴스통신 전문성과 뉴스통신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3.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뉴스통신·언론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4.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2개의 변호사 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2호에 대해서는 진흥회가 정관으로 정한다.

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3. 추천 이유

제29조제4항 단서 중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를 “대표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의2에 따른 대표이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표이사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

내에 재적이사 5분의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

⑥ 제30조의2에 따른 대표이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대표이사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에 대표이사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30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0조의2에 따른 대표이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대표이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대표이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이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8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기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대표이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대표이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포함한 대표이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00명 이상의 재석으로 개의한다.

⑥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표이사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대표이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대표이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대표이사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회의 이사 및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진흥회의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던

진흥회의 이사와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u>7명</u> 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임원) ① ----- ----- <u>11</u> <u>명의</u>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는 뉴스통신에 관한 전문성 및 <u>언론</u>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u>대통령이 임명</u> 하되, 그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고, 2명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 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 조직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다. <후단 신설> <신 설>	④ ----- ----- <u>사회</u> ----- ----- <u>다음 각 호에 따라</u> <u>추천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u> 1. <u>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별 추천인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정수(整數)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추</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천인 수는 소숫점 이하 수가 가장 큰 순으로 배분하며 소숫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천하여 결정한다.

각 교섭단 체별 추천인 수	= 5 ×	해당 교섭단 체 의석수	÷	각 교섭단 체 의석수 의 합계
----------------------------	-------	-----------------------	---	------------------------------

2. 진흥회 임직원 과반수가 뉴스통신 전문성과 뉴스통신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3.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뉴스통신·언론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4.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2개의 변호사 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

⑤ ~ ⑧ (생략)

제29조(이사회 구성 등) ① ~ ③ (생략)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제2호에 대해서는 진흥회가 정관으로 정한다.

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3. 추천 이유

⑥ ~ ⑨ (현행 제5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제29조(이사회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대표이사 추천
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의2에
따른 대표이사후보국민추천위
원회가 추천한 대표이사후보자
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
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

<신 설>

⑤ ~ ⑦ (생 략)

제3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한다.

1. ~ 5. (생 략)

<신 설>

6. (생 략)

<신 설>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
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
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
점자(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
면 최고득표자 모두를 대상으
로 한다)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

⑥ 제30조의2에 따른 대표이사
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대표이
사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 대
표이사 추천 시 그 절차와 과
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
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⑦ ~ ⑨ (현행 제5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제30조(이사회의 기능)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30조의2에 따른 대표이사
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30조의2(대표이사후보국민추천
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후보자

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대표이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이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8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기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대표이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대표이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후보자 경영계획 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포함

한 대표이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
회의 회의는 위원 100명 이상
의 재석으로 개의한다.

⑥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대표이사의 임기만료 90
일 전까지 대표이사후보국민추
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대표이사후보국민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대표이사후보자 추천 등에 필
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